

임마누엘 찬양대 회칙

2023년 4월 1일 제정

전 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예배의 한 부분으로서 공교한 찬양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충현교회 임마누엘찬양대의 회칙을 제정한다.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충현교회 1부 예배를 섬기는 본 찬양대의 명칭은 "충현교회 임마누엘찬양대"라 칭한다. (이하 "임마누엘찬양대"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1.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에서 예배와 찬양의 직분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2. 찬양대 내에서는 대원의 영성 및 음악성의 자질향상과 대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한다.
3. 교회 밖에서는 이웃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며 사랑을 나누는 일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소속]

임마누엘찬양대는 충현교회 찬양위원회에 속한다.

제 2 장 찬양대원

제 4 조 [구성]

임마누엘찬양대는 지휘자, 반주자, 찬양대원으로 구성된다.

제 5 조 [자격 및 선발]

임마누엘찬양대는 충현교회에 등록 후 1년이 경과한 만 18세 이상의 세례교인으로서 찬양을 위한 음악적인 자질과 영성을 가진 자로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6 조 [대원임명]

1. 입대 시는 입대원서를 제출한 후 대장단(대장, 부대장, 총무) 심의 및 지휘자의 오디션을 거쳐 파트 배정 후 대원에 임명된다.
2. 매년 말에 기존 대원 중 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대원으로 익년도에 계속 봉사를 희망하는 경우 대원의 명부를 작성하여 찬양위원회에 제출하고 당회의 승인을 거쳐 익년도의 대원으로

로 임명된다.

3. 찬양대양성부를 수료한 자 중 찬양대 입대를 희망하는 경우는 1항에 준하여 대원으로 임명한다.

제 7 조 [연습 및 등단]

임마누엘찬양대 연습은 주중(1회), 주일예배 등단 전, 주일예배 후에 실시하며, 주일 1부 예배를 담당하기 위해 등단한다.

제 8 조 [신입대원 수습기간]

오디션을 거쳐서 선발된 대원은 3주간의 연습(주중 및 주일) 참석 후에 등단할 수 있다. 단, 전공자나 타 찬양대 봉사 중 이적한 경우에는 기간을 2주로 단축 가능하다.

제 9 조 [임무와 권리, 휴직 및 제적]

1. 임마누엘찬양대의 모든 활동에 성실히 참여하며, 임마누엘찬양대 회칙을 충실히 준수한다.
2. 임마누엘찬양대원은 정당한 사유 발생 시에 휴직을 신청하여야 하며, 휴직 기간은 1년 미만으로 하되 1년 이상일 경우 사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출석일수는 반기별로 80% 미달 시에는 임원회의에서 제적을 결정할 수 있다. 또한, 당회에서 처리된 자와 찬양대 위상을 현저히 위해한 자는 제적사유가 될 수 있다.
4. 제적 사유에 해당하는 대원은 임원회의를 통하여 제적을 결정할 수 있다.

제 3 장 조직

제 10 조 [조직]

임마누엘찬양대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1. 당회 임직자

매년 말 당회에서 임직 받는 자로서 다음과 같다.

- 1) 대장: 임마누엘찬양대를 대표하며 대내외적 행정 및 기타 업무를 주관한다.
- 2) 부대장(남녀 각1인): 대장을 보좌하며 대원들의 제반 신상문제를 파악하고 찬양대의 활성화를 돕는다.
- 3) 총무: 임마누엘찬양대의 모든 회무를 총괄하며 임원회를 주관한다.

2. 임원

임마누엘찬양대 내에서 자체적으로 임명된 자로서 다음과 같다.

- 1) 부총무(남녀 각1인): 총무를 보좌하고, 총무 유고시 임무를 대행하며, 찬양대 활동 전반을 관리한다.
- 2) 서기: 찬양대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을 기록하고 정리하는 일을 담당한다.
- 3) 회계: 찬양대에서 발생하는 수입, 지출에 관한 회계 업무를 관장하며, 교회의 정기 회계감사를 받는다.
- 4) 파트부장: 해당 파트대원들의 출결 점검 및 파트 운영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 필요시 파트차장을 둘 수 있다.

- 5) 봉사부장: 찬양대 내 제반 봉사 및 친목도모를 위한 일을 담당한다.
- 6) 관리부장: 찬양대에서 필요한 악보, 가운, 비품 등에 대한 관리를 담당한다.
- 7) 신입부장: 신입대원이 찬양대에 잘 적응하도록 돕고, 입대원서 작성 및 관리를 담당한다.
- 8) 편집부장: 찬양대 내 소식지를 작성하고 관리한다.

제 11 조 [임원의 임기 및 선출]

1. 임원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은 총무의 추천을 받아 대장이 임명한다.

제 4 장 회의

제 12 조 [회의소집]

임마누엘찬양대 회의 정족수는 재적대원의 1/2이상이어야 하고 회의 의결은 출석대원의 1/2 이상으로 한다.

제 13 조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회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개정
2. 사업 및 결산보고
3. 임원선출
4. 사업계획 승인 및 예산 결의
5. 기타 안건

제 14 조 [임시총회]

찬양대 운영상 긴급히 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 소집되며, 본 회의 임시총회는 재적대원의 2/3 이상 또는 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 대장이 소집한다.

제 15 조 [임원회의]

임원회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정기임원회는 매월 마지막 주일에 실시하고 사업계획 및 전반적인 사항을 처리한다.
2. 임시임원회는 임원 과반수 이상이 요청할 때 총무가 소집한다.

제 5 장 사업

제 16 조 [사업]

임마누엘찬양대는 주일찬양, 특별찬양/연합찬양, 경건회, 영성훈련, 야외예배 및 기타 행사를 가질 수 있다.

1. 주일찬양: 충현교회 1부 예배 중 찬양대 찬양을 담당한다.

2. 특별찬양/연합찬양: 충현교회에서 각 절기에 찬양대가 순차적으로 실시하며 임마누엘찬양대는 그 순번이 되었을 때 이를 충실히 준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며, 행사에 필요한 예산은 별도로 교회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3. 경건회: 찬양대원들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찬양위원회 지도 목사님을 모시고 월1회 실시한다.
4. 영성훈련 및 야외예배: 영성훈련은 찬양대원들의 영적, 음악적 성장을 꾀할 뿐만 아니라 대원들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하여 개최할 수 있으며 장소와 시간은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5. 기타 행사: 임마누엘찬양대는 교회가 지시하는 행사에 참석하여야 한다.

제 6 장 재정

제 17 조 [재정의 운용]

임마누엘찬양대 재정은 자체 회비를 정하여 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찬조금 또는 교회로부터 예산 보조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제 18 조 [재정의 집행]

임마누엘찬양대 재정의 집행은 다음의 경우에 실행한다.

1. 찬양대원들의 경조비로 지출할 수 있다. 단, 경조사는 결혼식과 장례식으로 정하며 경조비 지급대상은 결혼의 경우는 대원 본인에 한하며, 장례의 경우는 직계가족 중 부모, 본인, 그리고 자녀로 하며, 결혼한 대원은 양가 부모를 포함한다.
2. 찬양 연습 시 간식비로 집행할 수 있다.
3. 행사에 필요한 경비 또는 소모품 구입비로 집행할 수 있다.
4. 그 밖의 경우 임원회의를 거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부칙

본 회칙은 공포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